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결 제2008-27-113호

사 건 명 (주)KT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0806개정002

피 심 인 (주)K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남 중 수

주 문

1. 피심인은 2008년 8월 30일부터 2008년 9월 28일까지 30일간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예약 모집을 하는 행위,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체의 행위 등 포함)를 정지할 것을 명한다. 다만, 피심인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은 사업정지 범위에서 제외한다.
2.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10,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3. 피심인은 일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수집, 제공, 위탁 등 항목별 개별 동의로 변경하고, 서비스 계약 체결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별도로 분리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초고속 인터넷 사업, 시내전화, 시외전화, 기업전용회선 등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말 총 매출액은 13조 3천억원이다.

< 연도별 서비스 가입자 수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명, 억원)

서비스별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 5월말
초고속 인터넷 (메가TV 포함)	가입자 수	6,241,789	6,352,542	6,515,541	6,684,230
	매 출 액	23,675	24,109	20,036	8,378
시내전화	가입자 수	20,497,217	20,330,575	19,980,273	19,796,371
	매 출 액	47,029	45,510	43,227	8,886
시외전화	가입자 수	18,598,959	18,687,801	18,571,171	18,478,471
	매 출 액	8,655	7,953	7,845	2,471
기업전용회선	가입자 수	446,131	439,847	441,243	426,668
	매 출 액	23,121	22,240	13,284	4,371
기 타	가입자 수	-	-	-	-
	매 출 액	38,577	40,341	48,999	25,241
합 계	가입자 수	-	-	-	-
	매 출 액	141,057	140,153	133,391	49,347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2005 ~ 2007년), KT의 제출자료(2008. 5월말)

※ 기타 :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시외전화, 기업전용회선을 제외한 회선설비임대 역무 등 20여개 서비스 합계

나. 개인정보 동의 현황

피심인의 가입신청서상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위탁을 일괄적으로 동의 받고 제3자 제공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가입자는 전체 개인 가입자 23,534,525건(2008. 6. 26. 기준) 중 3,411,005건(14.5%)이다.

< 개인정보를 동의 받는 방법 및 건수>

(단위 : 건)

구분	동의받는 방법	동의건수
신청서 (서면)	○ KT-Plaza나 영업채널에 방문한 고객이나 대면 고객을 상대로 신청서에 서명을 받고 고객 정보 활용에 동의	2,080,093
온라인	○ 개통직원이나 A/S직원이 방문하여 웹 사이트(http://secure.megapass.net)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에 의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동의	4,916
전화	○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여 동의에 대해 설명고 가입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하면 전화내용을 녹취	1,158,141
PDA	○ 개통직원이나 A/S직원이 방문하여 직원이 가지고 있는 PDA에 서명하고 동의('08. 3. 9. 부터 시행)	167,855
합계		3,411,005(14.5%)

※ 출처 : KT의 제출자료

피심인의 신청서 관리는 2005년 5월부터 청약서 이미징 관리집중센터에서 스캔 후 집중 보관하고 있다.

※ 위탁점 -> KT-Plaza로 송부 -> 청약서 이미징 관리집중센터로 택배 배송

다. 이용약관 중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피심인은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심인 KT의 이용약관 내용

- 전기통신기본이용약관 제16조(계약당사자의 의무)

- ①4.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메가패스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케이티의 의무)

- ①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시내전화 이용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시내전화(이하 “전화”라 합니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사업법령에서 정하는 통화권 안에서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 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로 시내전화를 이용할 때에는 이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2.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6. 25 ~ 7. 15 기간 중 2006. 1. 1 ~ 2008. 6. 20 까지 피심인이 모집한 가입자중 개인정보 활용에 미동의한 가입자에 대해 TM을 실시한 내역, 해지자에게 TM을 실시한 내역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피심인은 2005년 11월에 피심인의 Ann폰 재고판매 촉진을 위해 위탁점^(주)○○텔레콤과 2005. 11. 14 ~ 12. 31. 기간 동안 특별 판매 약정(Ann폰 재고판매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심인의 가입자정보 조회가 가능한 통합고객정보시스템(ICIS)의 ID 18개를 2005년 11월 ~ 2007년 7월까지 위탁점^(주)○○텔레콤)에 제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 등의 업무를 실시하게 하면서, 이용자에게 미리 그 위탁 사실을 고지한 바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피심인은 위탁점인 TEL-Plaza(전국 7개 지역, 13개 위탁법인 운영)에게 피심인의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피심인의 상품을 TM영업을 통해 모집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위탁점인 TEL-Plaza가 2007. 7. 27 ~ 2008. 5. 20. 기간 동안 피심인의 상품을 모집한 실적은 총 721,431건이다.

특히, 피심인의 2007년 7월 27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한 상품 모집 실적은 42,634건이며, 동 실적 중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자는 32,726건(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대상 : 28,179건, 유선전화 가입자 대상 : 4,547건)으로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통해 신규 상품을 유치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2007. 7. 27.~2008. 5. 20. 기간 중 TEL-Plaza 모집실적(2007.7.27.이후 신규가입자) >
(단위 : 건)

역무별 구분	합 계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대상 모집실적	37,255	9,076(24.4%)	28,179(75.6%)
유선전화 가입자 대상 모집실적	5,379	832(15.5%)	4,547(84.5%)
합 계	42,634	9,908(23.2%)	32,726(76.8%)

※ 피심인 KT의 “07. 7월 TEL-Plaza 캠페인 계획” 문건에 의하면 매월 약 400만건의 대상고객이 추출되며, 이 중 ‘07. 7월 이후 신규 가입자(약 26.1만명)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미동의 비율(76.8%)을 10개월간 적용하면 상당한 정도의 TM 영업이 미동의자에게 실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피심인의 ○○지점에서 자사의 전산시스템으로 추출한 개인정보(가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상품명 등)가 영업팀 직원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엑셀 형태로 보관(19,449건)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 엑셀자료(19,449건)에는 2007년 7월 27일 이후 신규 가입자 중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 가입자 470건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동 자료(19,449건) 중 일부 자료(843건)가 위탁점(예○○ : 개인사업자)에 제공되어 TM 영업을 실시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제공된 자료(843건) 중 2007년 7월 27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13건이며 그 중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자는 9건(69.2%)으로 확인되었다.

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1) 해지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피심인의 ○○지점에서 엑셀 형태로 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19,449건)에는 완전해지가입자 개인정보가 503건 포함되어 있었고,

위탁점(예○○ : 개인사업자)에 제공된 개인정보 자료 843건 중 완전해지가입자 23건에 대해 TM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완전 해지가입자 : 서비스(일반전화, 메가TV, 메가패스) 중 어느 것에도 가입되지 않은 해지자

2006. 1. 1 ~ 2008. 6. 19. 기간 중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된 피심인의 TM관련 민원 105건 중 완전해지가입자 2건에게 TM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가입자 개인정보의 동의 받은 목적외 이용

피심인은 ○○카드(2007. 8. 20.)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자 정보를 피심인의 위탁업체에 제공하여 TM 등의 방법으로 84,461건의 상품을 유치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자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2006. 1. 1 ~ 2008. 6. 19. 기간 중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된 피심인의 TM 관련 민원 105건 중 TM 수신 거부자(25명)에게 반복적으로 TM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의 파기 등 조치의무 위반 관련

2006. 1. 1 ~ 2008. 6. 19. 기간 중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된 피심인의 TM 관련 민원 105건에 대해 피심인의 처리결과를 조사한 결과,

TM 수신 거부자(25명)에게 반복적으로 TM을 실시하고, TM 수신거부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M 수신거부 조치를 누락(11명)시키는 등 TM 수신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미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피심인이 2005년 11월 14일 ~ 2007년 7월까지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고지 없이 위탁점^(주)○○텔레콤)에 피심인의 가입자 정보 조회가 가능한 ICIS(통합고객정보시스템)의 ID 18개를 제공한 행위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행위에 해당하여 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07. 1. 26일 법률8289호로 개정前, 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舊 정보통신망법 제25조 (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

-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동 행위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메가패스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전기통신기본이용약관 제16조를 위반한 것인 바,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동 약관 조항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신고된 이용조건”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역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심인의 전기통신기본이용약관 제16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 ④4.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피심인의 메가패스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케이티의 의무)

- ①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 생략

5.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생략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별표 1]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1항 관련)

5. 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사업정지 3개월

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피심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점인 TEL-Plaza와 예○○(개인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서비스 가입 유치 TM 영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⑤ (생략)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 행위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메가패스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전기통신 기본이용약관 제16조를 위반한 것인 바,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동 약관 조항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신고된 이용조건”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역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심인의 전기통신기본이용약관 제16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 ① 4.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피심인의 메가패스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케이티의 의무)

- ①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 생략

5.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생략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별표 1]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1항 관련)

5. 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사업
정지 3개월

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1) 해지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피심인은 자사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 가입 유치를 위한 TM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이외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 행위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메가패스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전기통신 기본이용약관 제16조를 위반한 것인 바,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동 약관 조항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신고된 이용조건”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역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입자 개인정보의 동의 받은 목적외 이용

피심인이 초고속 인터넷(메가패스) 가입신청서(이면)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제공하게 되는 신상품의 소개”로 명시하고

○○카드(2007. 8. 20.)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자 정보를 피심인의 위탁업체에 제공하여 TM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유치하게 한 행위는

비록 동의서에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제공하게 되는 신상품의 소개”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의서의 문구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가입자 자신의 개인정보가 카드상품 판매에 이용될 것이란 예측이 어렵고,

카드상품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이외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KT의 메가패스 가입신청서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내역(’07. 8월)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귀사(KT)가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

· 서비스 가입, 변경 및 해지, A/S, 서비스 관련 문의를 포함한 이용계약 관련 사항의 처리와 귀사가 직접 또는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제공하게 되는 신상품의 소개, 이벤트 안내, 고객 유치, 관리 등을 포함한 각종 마케팅 활동 등에 이용

※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 행위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메가패스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전기통신 기본이용약관 제16조를 위반한 것인 바,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동 약관 조항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신고된 이용조건”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역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자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피심인이 TM 수신을 거부한 해지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TM을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 행위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피심인의 메가패스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전기통신 기본이용약관 제16조를 위반한 것인 바,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동 약관 조항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신고된 이용조건”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역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의 파기 등 조치의무 위반 관련

피심인이 TM 수신 거부자의 개인정보를 TM에 이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의무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②생략
-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⑦생략

4. 시정조치

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사항

피심인이 위탁점에 통합고객정보시스템(ICIS)의 ID 18개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한 행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점에 제공하여 서비스가입 유치 TM을 하도록 한 행위, 완전해지자의 개인정보를 TM에 활용하거나, 가입자 정보를 위탁점에 제공하여 업무제휴 상품(○○카드)을 TM 등의 방법으로 유치하게 하거나, TM 수신 거부자에게 반복적으로 TM을 실시한 행위 등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신고된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피심인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적발 건수가 약 11만 7천여건에 이르는 점, 개인정보를 유용한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별표 1]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1항 관련)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사업정지 3개월

2008년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예약모집을 하는 행위,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체의 행위 등 포함)를 정지할 것을 명한다. 다만, 피심인만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 지역은 사업정지 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TM 수신 거부자의 개인정보를 TM에 이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8. (생략)

8의2.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 정보통신망법상 시정명령

아울러,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명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위탁 시 항목별로 개별동의를 얻도록 하여 개인정보 활용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개선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과 상품소개 등 TM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분리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개선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사업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4항에 의거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결 론

상기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 8. 25.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송 도 균 (인)
	위 원	이 경 자 (인)
	위 원	이 병 기 (인)
	위 원	형 태 근 (인)